

# 대학발전기금 운영규정

제정 : 2008.09.01  
개정 : 2008.12.17  
개정 : 2011.03.01  
개정 : 2011.11.22  
개정 : 2020.09.01  
개정 : 2021.12.01  
전문개정 : 2022.05.01  
개정 : 2023.10.16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 연구, 장학사업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기금 : 대학의 교육, 연구, 장학사업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2. 기부금(품) : 교육, 연구 및 장학사업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연구 및 업무용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한다.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특정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일반기부금(품)과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특정기부금(품)으로 구분한다.
3. 기부자 : 대학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전기금 종류) 발전기금은 그 조성 및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품)
2. 특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

제4조(발전기금 운용) 발전기금은 출연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출연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 장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제5조(목적) 기부금 모금계획수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원과 직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발전기금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외부인 약간명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발전기금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조성 목표액의 결정
3. 발전기금조성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기본 사항
5. 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발전기금 용도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발전기금조성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 발생시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발전기금의 관리

제11조(발전기금 관리) ① 기부금(품)의 관리 및 운영은 사무처 사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10.16.>

②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를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법인과 협의하여 그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의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기부금(품)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보며, 이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12조(영수증 등의 발급) 총장은 기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영수증 또는 물품수령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 4 장 기부자 및 공로자에 대한 예우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본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자(발전기금 약정서는 <별표1>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하며, 기부금의 액수에 따른 예우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1. 소득세 및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2. 본교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반 교육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3. 학교 간행물 우송
4. 기부자 명단 및 기금 사용 내역을 대학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 교내매체를 통하여 공지
5.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6. 본교 특정 상징물에 성명 각인
7. 고액의 기부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과 특별기념물을 제작하여 영구 보존

제14조(발전기금 조성 공로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유치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자는 발전기금 유치자로서(관장부서도 포함하며 교직원 출연자 본인 및 본인의 개인사업체는 제외함)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을 포함한다.
2. 현물(토지, 건물, 부동산, 유물, 예술품 등)은 감정가에 의한 시가로 산정한다.
3. 현금 및 현물 유치액의 성과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되, 최고 한도액은 1건당 (수납금액) 1,000만원으로 하며, 교직원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 가. 현금기부금 중 전액 지출되는 기부금(재직교직원은 5%, 퇴직교직원은 10%지급)
  - 나. 현금기부금 중 연구, 교육비, 장학, 시설로 적용되는 기부금(재직교직원 10%,

퇴직교직원은 15% 지급)

다. 현물기부(재직교직원은 3%, 퇴직교직원은 5% 지급)

## 제 5 장 재 정

제15조(회계) ① 기부금의 회계는 대학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 이 규정 시행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DUC 대원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기탁금액	일금 : 원정 (₩ )		
구 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기업 및 단체 <input type="checkbox"/> 독지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탁자	성 명(단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직 장 명		부 서 명
	주 소	자 택	전 화
	E-mail		휴대폰
유치자	성 명		소 속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702701 - 01 - 411935 / 예금주명 : 대원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여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 예정, 납부 )
	<input type="checkbox"/> 분 납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분납횟수 : 회 / 월납부액 원 (₩ )		
용도지정	<input type="checkbox"/> 대학 및 학과(전공) 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프로그램기금 <input type="checkbox"/> 국제화기금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체육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 개선기금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위임		
연락처	※기탁서는 e-mail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Tel 043-649-3164 Fax 043-645-9170 e-mail nross1@daewon.ac.kr 27135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신월동) 대원대학교 사무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원대학교의 발전기금 기부자를 위한 예우 사업에 상기 본인의 개인정보를 예우사업 종료 시까지 대원대학교에 제공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전기금 예우사업 등 편의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과 각종 예우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대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약정) 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대학발전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  
대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표2> 예우 프로그램

가. 기념품 및 간행물 예우(1,000만원 이상 매년 송부)

구 분	500만원 미 만	500 만 원 이 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 상	3억 원 이 상	5억 원 이 상	10억 원 이 상
감사서신	●	●	●	●	●	●	●	●
대학 간행물	●	●	●	●	●	●	●	●
달력	●	●	●	●	●	●	●	●
감사패		● (감사장)	●	●	●	●	●	●
다이어리			●	●	●	●	●	●

나. 특별초청 예우

구 분	500만 원 이 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 상	3억 원 이 상	5억 원 이 상	10억 원 이 상
입학식,기념식				●	●	●	●
초청 약정식			●	●	●	●	●
장학금 수여식			●	●	●	●	●
음악회,전시회 초청	●	●	●	●	●	●	●

다. 편의시설 제공 예우(※ 1억 이상 평생 예우)

구 분	500만 원 이 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 상	3억 원 이 상	5억 원 이 상	10억 원 이 상
도서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휴양시설 할인 이용		●	●	●	●	●	●
경조사 예우				●	●	●	●